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 원 중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서울시는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작품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정책, 제도,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하지만, 조례 내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부재하여 위원회 운영에 법적 근거가 미비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
- 이에,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「서울

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2 “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18일까지로 한다”는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